

개정일시 23.12.04  
 개정사유 기타 내용 명확화 등 이용약관 정비  
 개정내용

		제정(23.01.01)	개정(23.12.04)
11조	2항	회사는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 받는자 및 제공목적을 사전에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b>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b>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 받는자 및 제공목적을 사전에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b>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b>
12조	2항	없음	(추가) 회사는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경우 위치정보법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제13조에 따라 작성합니다.
	3항	회사는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경우 위치정보법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및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회원 탈퇴 및 서비스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련 법령에 의한 보관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보관합니다.	회사의 개인위치정보 보유기간은 안정적이고 투명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약 종료시까지 전기간 보유하며, 회원 탈퇴 및 서비스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는 법령에 따라 해당 기간만큼 보관합니다.

개정일시 24.08.05  
 개정사유 제 3자 제공 시 회원 통보 방식 등의 정비.  
 개정내용

		변경전	변경후
11조	3항	신설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 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매회 회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이하 "정보제공내역"이라 합니다)을 즉시 통보합니다.
	4항		단,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합니다.  ①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②회원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장치 외의 통신 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5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정보제공내역을 (O일마다 또는 O회씩) 모아서 통보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회원이 회사의 절차에 따라 요청할 경우 전항에 따른 즉시 통보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6항		회원은 제1항·제2항·제5항에 따른 동의를 하는 경우 이용·제공 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와 회원의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제3자 제공의 경우 통보 방법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